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73 발의연월일: 2020. 10. 8.

발 의 자: 박홍근·김경만·전용기

서삼석 · 이정문 · 천준호

백혜련ㆍ허 영ㆍ진성준

박상혁 · 장경태 · 홍기원

문정복 의원(13인)

제안이유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9년 2.7조원 에서 2 019년 6.3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8.8%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택배,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가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운송·중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 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 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배, 소화물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함께, 종사자·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5조 및 제6조)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영위토록 함.

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안 제7조 및 제8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손해 배상 연대 책임과 함께 영업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의 무를 부여함 다.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안 제9조 및 제10조)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하도록 함.

라.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안 제15조)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함.

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자를 육성 및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 심사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

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9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육성, 연구개발 촉진, 시설·장비 확충, 고용·창업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물류서 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운영(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생활 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음. 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안 제21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며, 정책 수 립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 및 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설·장비 확충·개선, 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연구개발, 효율화 컨설팅, 교육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육성·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표준화를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특례 등(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시설의 건설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생활물류시설확충을 위한 도시·군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가격기준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타. 표준계약서 및 서비스약관의 근거 마련(안 제31조 및 제3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상호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한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파. 부정한 대가의 지급 및 수취를 금지하는 장치 도입(안 제33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함.

하.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안 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거.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안 제35조 및 제38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이상 기후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안전 확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너.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안 제39조에서 제4

1조까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산업의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협동조직을 통해 상호 지원하고 운송사고의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택배서비스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집화 및 분류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

-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 다.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 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득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
 -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사업인증을 받은 자
- 5.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 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7. "생활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화물의 집화·하역·분류·보관·배송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 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았을 것
 - 2.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 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 2. 다른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 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 이 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이 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제1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화물의

집화, 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집화, 배송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점의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체결) ①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최초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갱신하려는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총 계약기간"이라 한다)이 6년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총 계약기간 6년을 초과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지위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사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 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 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 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종사자 간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 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따라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법인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른 택배서비스사업자 법인과 합병한 경우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다른 사람에게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13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 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라 화물을 집화·배송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14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

우

- 4.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 5. 제5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6.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 제15조(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이용 제한)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을 집화·배송하려는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 제1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 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조사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 정하여 제16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3. 「산업표준화법」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에 관한 인증업무 또는 한국산업

표준 개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이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3. 제16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 ⑥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다른 자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표시를 빌려준 경우

- 3. 제16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②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육성정책
-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조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5.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의 촉진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 7. 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 및 종사자의 보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시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0조(정책협의회)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 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주기· 방법·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 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1.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 및 개선
-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 범도시·단지의 조성
-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3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4조(창업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 4. 그 밖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교육기관 등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의 육성·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교수인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 제26조(표준화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화물의 포장·보관·수송· 정보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 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통신·전기시설·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농산어촌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간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 3.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설치 또 는 개량 사업
 -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이하 "도시·군계획이라 한다)의 변경 또는 같은 조 제7 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9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지원 및 생활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가격기준을 대통령령 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에서 정한 가격기준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면 해당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면적 중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가 입주하여 사용할 물류시설용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 제30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관할 도시·군 계획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관할 도시·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 제31조(표준계약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제32조(서비스약관)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 (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 할 수 있다.
- 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제16조에 따른 인증(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서비스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부정한 대가의 수취 금지)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생활물류 서비스종사자가 아닌 자는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 다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서비스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 및 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종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자가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서비스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활물류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
 - 2.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정성
 - 3. 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 · 종사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서비스평가는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한 후 항목별 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22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보상 등에 관한 정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를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 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 등을 받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5조(종사자의 보호)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 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 충분한 공간 및 시설의 확보
 - 3.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안전대책의 마련
 -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36조(생활물류 쉼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
 -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
 -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
 -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 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 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8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1.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 2.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 3. 제8조에 따른 영업점에 대한 관리

- 4. 제32조에 따른 서비스약관의 변경
-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단체

제39조(협회의 설립)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 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를 행정 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⑦ 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 제40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 ③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조합원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 2. 조합원이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 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조합원의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 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 · 연구 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 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2조(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 도·감독한다.

제43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운송수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제16조제7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등록·인증의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 2.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 4. 제2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6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또는 제4 5조제4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제1항 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택배 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 2. 제15조를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택배 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 2. 제5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린 자
 - 3. 제5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자
-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속, 양도・양수,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자
- 8.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33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의 대가를 수취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
- 1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 서류를 제출한 자
-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2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표준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는 이 법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 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51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

제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택배서비스사업 계약의 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및 제10조는 이 법 시행 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갱신 계약은 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운송 위탁계약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를 "「건설기계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